

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|
| 관리번호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처리기간 | 즉시 |
| 기본사항      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| ①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<br>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<br>따른 세액의 120%,100% 또는 80% 중에서 선택<br>합니다)   | 120%                        | 100% | 80%  |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
| 조정신청<br>내용 | ②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<br>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<br>따른 세액의 120%,100% 또는 80% 중에서 선택<br>합니다) | 120%                        | 100% | 80%  |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|
|            | ③조정하고자 하는 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월 원천징수분부터<br>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 |      |      |    |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천징수의무자 귀하

작성방법

- "①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"란에는 신청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천징수방식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- "②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"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- "③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"란에는 신청일 이후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를 적습니다.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